

「2026 치유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실증」 신기술 기반 치유 융복합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사업 공고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2026 신기술 기반 치유 융복합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신기술을 접목한 치유 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역량 있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4. 30.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기술(다면 영상 및 AI 기반 몰입형·체험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치유형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고 정서적 치유 효과 제고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 지원예산
 - 최대 240,000천원(총 2개 과제, 2개사 선정) / 과제당 최대 120,0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내용		
2개 과제 (과제당 최대 120,000천원)	- 실증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치유 콘텐츠 제작지원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 · 제작예시		
	구분	내용	비고
	스토리텔링	○ 신기술 기반 치유형 콘텐츠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감정 치유 중심 서사에 따라 구성한 융복합 아카이빙형 콘텐츠	-
	체험형 (인터랙티브)	○ IMAX급 몰입형·체험형 미디어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디어아트	○ IMAX급 첨단 영상 기술과 연계한 실증·테스트 기반의 시청각 미디어아트 콘텐츠	
라이프스타일 (디지털치유공간)	○ 테스트베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콘텐츠·공간이 융합된 지속가능형 디지털 치유 경험 공간 계획		
※ 해당 콘텐츠는 2027년도 전용 실감형 공간에서 실행될 콘텐츠로 당해연도에는 전용 실감형 공간이 구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빔프로젝터 등 범용 장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유연하게 실증이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함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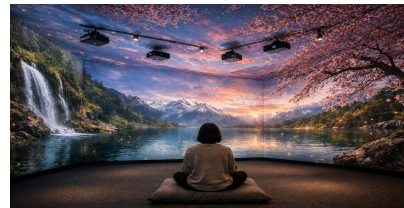
○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 자격	규모	- 총 2개 과제, 2개사 선정(과제당 1개사 수행)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대상	-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과제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기업대표 제외) ※ 위 사항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지원 분야	[도내기업] [도외기업] - 도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본사) - 도외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 도내기업 지사는 지원 불가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복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복 사업장 유지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복 사업장 유지
		- 신기술* 활용 치유형 융복합 콘텐츠 개발** * 다면영상·AI 등 시각 확장 기술과 공간형 사운드 융합 실감형·몰입형 콘텐츠 개발 ** 자연 및 휴식을 주제로 한 감정 회복 및 치유지수 연계 기반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성 (예시1) 파노라마 기반 몰입형 명상 가이드 치유 콘텐츠 개발 (예시2) AI 기반 맞춤형 치유 전시 콘텐츠 개발 ※ 본 사업은 원광대학교에서 제시하는 치유 콘텐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
	업종	- 사업자등록증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 단순 예술 및 창작 분야 지원 불가
공통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IP(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계약서, 가산점 적용시 확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컨소시엄 불가	
지원 조건	개발 기간	- 협약기간(협약일 ~ 2026. 11. 30.) 내 2종의 프로토타입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6년 하반기 중 2회 이상 개최 예정인 콘텐츠 연계 캠프에서 콘텐츠 적용 및 실증 필수 수행 ※ 해당 콘텐츠는 2027년도 전용 실감형 공간에서의 운영을 목표로 하나, 당해연도에는 전용 공간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빔프로젝터 등 장비를 활용한 범용 공간(회의실, 체험관, 전시공간 등)에서도 유연하게 실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또한, 향후 상설 공간 적용 및 콘텐츠 확장을 고려하여, 공간 규모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모듈형·확장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본 과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2027년도 전용 실감형 공간 운영 및 차년도 확장 활용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 권한을 포함하여야 함
	자부 담금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80,000,000원(90%)×자기부담금 8,890,000원(10%)=총 사업비 88,890,000원 - 지자체 보조금(지방비) 매칭 불가(지자체 보조금을 사업비에 직접 편성할 수 없음) - 자기부담금 내 인건비 편성 불가(단, 신규고용 인력에 한해 편성 가능) ※ 자부담금 비율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음
고용 창출	- 신규인력 2명 이상의 고용 必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하며 사업공고일 이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 ※ 해당인력에 대해선 우리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참여율 100% 산정 필수)	
보증 보험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발행	

[참고 : 콘텐츠 실증 예시]



▲ 다면(3면)



▲ 다면(4면)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사업공고(안) ※ 내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4. 30.(목) ~ 2026. 5. 19.(화) / 20일
 - (공고방법) 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 (신청접수)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안) ※ 내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 2026. 5. 20.(수)
- ※ 모집 수가 지원규모 2배수(4개사)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없이 적합성 검토 후 대면평가
- (대면평가) 2026. 5. 27.(수)
 - (협약체결) 2026. 6. 1.(월) 예정
- ※ 현장 점검 후, 최종 선정기업 별도 연락 예정

○ 세부일정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시 기(예정)
사업공고/접수	- 모집공고(홈페이지) - 이메일 신청접수(js0519@jcon.or.kr)	4. 30.(목) ~ 5. 19.(화)
서면평가	- 서류평가 ※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	5. 20.(수)
대면평가	- 발표평가 - 선정기업 예산적정성 검토 및 예산확정 ※ 모집 수에 따라 평가일정 및 방식 변경될 수 있음	5. 27.(수)
예산심의	- 선정기업 예산 적정성 검토 및 예산 확정	5. 27.(수)
현장점검	- 선정기업 운영 실태점검 등	5월 중
협약체결	- 과제협약 및 1차 지원금 교부(70%)	6. 1.(월)
중간평가	- 과제 수행 추진율 중간점검(현장점검 동반) - 평가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교부(30%)	8월 중
결과평가	- 콘텐츠 결과물 실증 등 최종평가	11월 중
사업정산	- 정산/실적보고서 및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12월 중

- ※ 접수절차에서 제재사항, 구비서류 누락 및 미제출, 중복지원 등 적합성 검토
- ※ 신청 수가 지원규모의 2배수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시기 및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4. 30.(목) ~ 2026. 5. 19.(화) 15:00까지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js0519@jcon.or.kr)
 - ※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 마감시간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문의처) 문화콘텐츠사업팀 정지승 선임(☎(063)-282-2316)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방식
과제신청서	①	표지 및 과제신청서	- 사업안내서 서식 참조	PDF
	②	세부 사업계획서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		
참여인력	①	참여인력 투입계획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및 이력사항 등	
기타서류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③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필수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②	4대보험 사업장가입명부	- 제출일 기준 1개월 미만의 것 ※ 참여인력 전원 4대보험 가입 필수(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분)	
	③	표준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 3개년(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불인정)	
	④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⑥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 누락된 서류, 파본 등에 대해서는 수정 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과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 참조

○ 서류제출방법

-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송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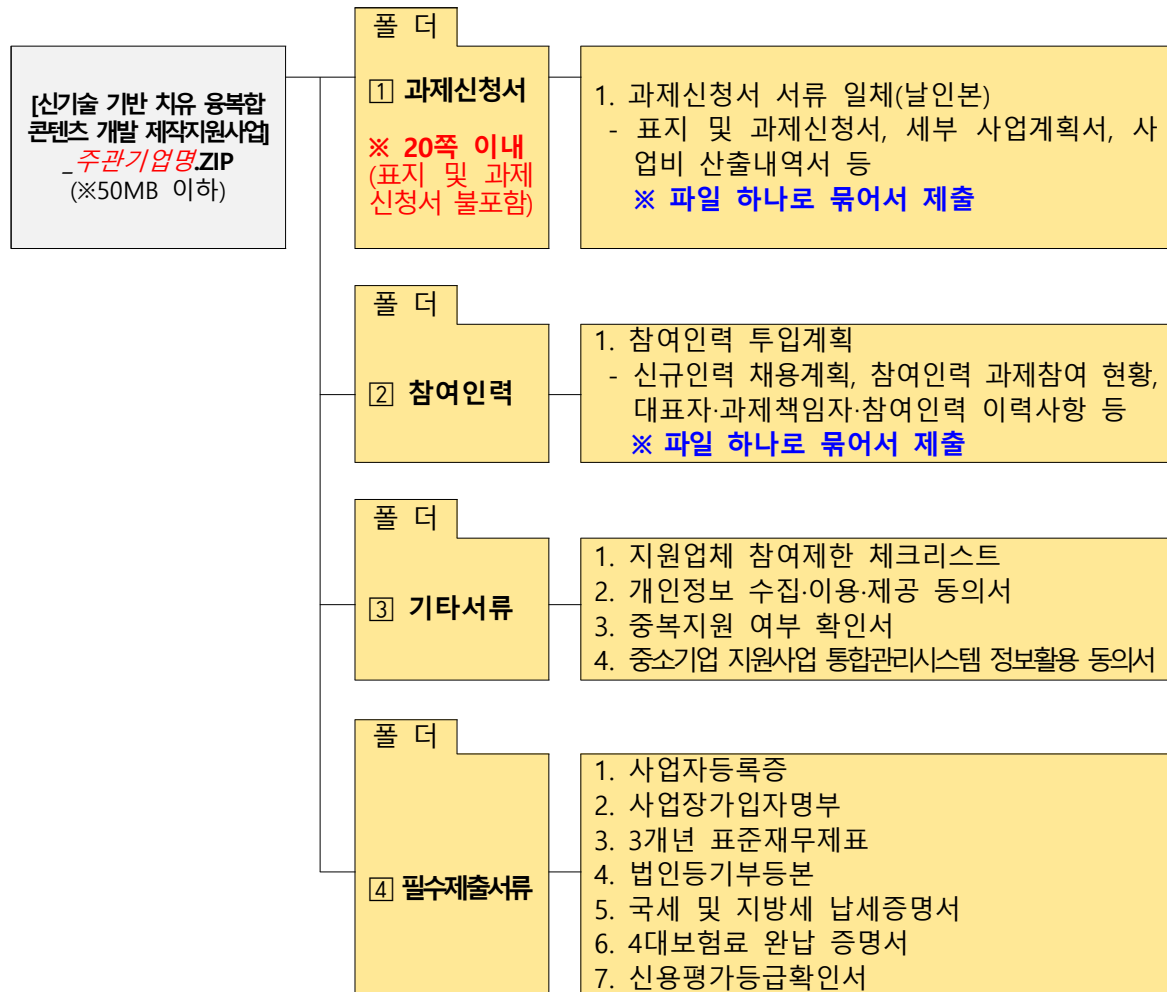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제출 압축파일명: [신기술 기반 치유 응복합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사업] 주관기업명.ZIP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파일로 제출(EGG, ALG 등 ZIP 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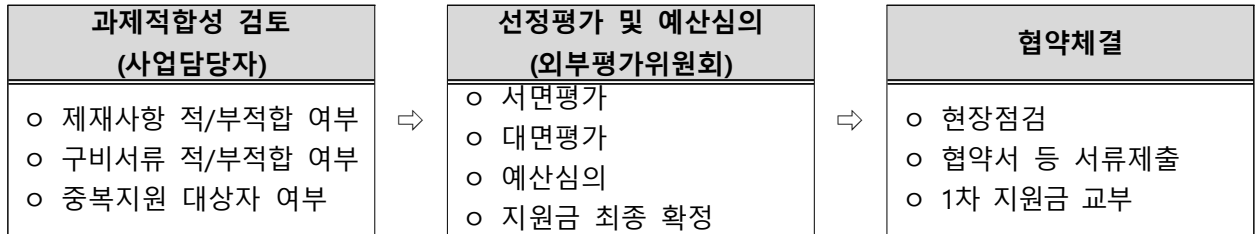
· 압축폴더트리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 서면평가 평가기준(안)

구분	세부내용
선정 규모	- 모집 규모의 약 2배수 선정 예정
평가 방법	-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후 제출자료 검토를 통한 전반적인 과제 내용 평가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최저점 제외 후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점수 산정
선정 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적합', 70점 미만 '부적합' ※ 모집규모 2배수 / 4개사 내외 선정

- 서면평가 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8																														
	인적자원	- 보유/투입 인력 규모 및 경력에 의한 평가	7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25%;">회사채</th> <th style="width: 25%;">기업어음</th> <th style="width: 25%;">기업신용평가등급</th> <th style="width: 20%;">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용 평가 등급</td> <td>AAA, AA+, AA0, AA-</td> <td>A1, A2+, A20,</td> <td>AAA, AA+, AA0, AA-</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td> </tr> <tr> <td>A+, A0, A-, BBB+, BB0</td> <td>A2-, A3+, A30</td> <td>A+, A0, A-, BBB+, BB0</td> </tr> <tr> <td>BBB-, BB+, BB0, BB-</td> <td>A3-, B+, B0</td> <td>BBB-, BB+, BB0, BB-</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td> </tr> <tr> <td>B+, B0, B-</td> <td>B-</td> <td>B+, B0, B-</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td> </tr> <tr> <td>CCC+ 이하</td> <td>C 이하</td> <td>CCC+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관련 서류 미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0</td> </tr> </tbody> </table>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 평가 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5	A+, A0, A-, BBB+, BB0	A2-, A3+, A30	A+, A0, A-, BBB+, 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관련 서류 미제출				0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신용 평가 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5																										
			A+, A0, A-, BBB+, BB0		A2-, A3+, A30	A+, A0, A-, BBB+, 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관련 서류 미제출				0																													
정성 평가 (80)	역량 및 전문성	-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기업 전문성 보유 여부 - 참여인력 등 과제 수행 역량 보유 여부 -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사업관리 경험	20																														
	기획력 및 차별성	- 치유 시나리오 및 콘텐츠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 시나리오 기반 창의적 콘텐츠 구성 여부 - 타 콘텐츠 대비 차별화된 구현 전략	20																														
	적합성 및 실증가능성	- 사업목적(치유·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부합 여부 - 실감형 콘텐츠 시나리오 반영도 및 구현 적정성 - 실증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20																														
	성장가능성	- 콘텐츠 확장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 지속 운영 및 후속 고도화 가능성	10																														
	예산 편성 적정성	- 사업비 산출근거의 타당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10																														
합 계			100																														

○ 대면평가 기준(안)

구분	세부내용
평가 방식	- 제출서류 기반 발표평가 진행(과제별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시간	- 과제당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평가 방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최저점을 제외 후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점수 산정
선정 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적합', 70점 미만 '부적합'
최종 선정	- 70점 이상 '적합'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대면평가 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정성 평가 (100)	역량 및 전문성 (20)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성	8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6
		-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및 사업관리 경험	6
	기획력 및 차별성 (30)	- 치유 시나리오 및 콘텐츠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15
		- 시나리오 기반의 창의적 콘텐츠 구성도	8
		- 타 콘텐츠 대비 차별화된 구현 전략	7
	적합성 및 실증가능성 (25)	- 치유·융복합 콘텐츠 사업 목적과 부합성	9
		- 실감형 콘텐츠 시나리오 반영도 및 구현 적정성	8
		- 실증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8
	성장가능성 (15)	- 콘텐츠 확장 가능성 및 성장 잠재력	8
		- 지속 운영 및 후속 고도화 가능성	7
	예산 편성 적정성 (10)	- 사업비 산출 근거의 타당성	5
-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5	
합 계			100

※ 지원과제 가짓수 미달로 서면평가가 생략된 경우 **상기 서면평가 평가지표 적용**

[용어설명]

- 총사업비: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사업비 중 진흥원장이 주관기업에 지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사업비 중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총 사업비의 10% 이상)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에 의거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수행기업(주관기업)에게 있음

- 과제신청 및 관리

- 본 사업의 공모 및 신청·사업관리·집행은 우리 원 시스템을 통해 운용됨

- 사업비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예산심의에 따라 조정·삭감될 수 있음
-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통장 잔고 '0원'인 상태에서 운용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제 사업비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 분할지급(최초70% 교부 이후 사업비 지급 상황에 따라 추가교부)

- 자기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기부담금을 필수 편성해야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 (예시) 총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계산

- 지원금 80,000,000원(90%)×자기부담금 8,890,000원(10%)=총 사업비 88,890,000원
- 지원금 70,000,000원(90%)×자기부담금 7,780,000원(10%)=총 사업비 77,780,000원
- 2차 지원금 교부 전 사업비에 편성한 자기부담금 미소진 시 2차 교부금(30%) 지급 불가
- 자산취득비의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종료 이후 2년간 과제관리·점검 등 사후 성과관리가 진행됨
- 사업비 집행 시 가족,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 진흥원 제작지원사업 선정 기업 간 거래 불가

※ 정부출연사업 등 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 ※ 이종취업(타 업체 대표 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인력이 통상적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사업운영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에는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원 문구 삽입 권장
※ (문구 예) 해당 콘텐츠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글로컬대학30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참고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재대상 사유별 조치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 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만,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만,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 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 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를 초과할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표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 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기술표 해당액 환수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